|  |  |  |
| --- | --- | --- |
| **중국(광둥)자유무역시험구·중국(톈진)자유무역시험구·중국**  **(푸졘)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 관리정책 실시에 관한 문화부의 통지**  문시함[2015]490호  광둥(廣東)성 문화청, 톈진(天津)시 광파전영전시국, 푸졘성 문화청 :  <중국(광둥)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15]18호), <중국(톈진)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15]19호), <중국(푸졘)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15]20호)를 관철하고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광둥)자유무역시험구·중국(톈진)자유무역시험구·중국(푸졘)자유무역시험구(이하 '시험구'로 통칭) 문화시장 관리 관련정책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시험구 내에 외국투자자가 경영하는 공연중개기구, 공연장소경영업체를 설립하여 본 성(직할시)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1)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인단독투자의 공연중개기구를 설립 및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상영업집조 수령 후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인단독투자의 공연장소를 설립 및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상영업집조 수령일로부터 20일 내에 공상영업집조 및 소방, 위생 주관부서의 비준문서를 지참하여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비안(備案)하고 공연장소 경영업체 비안(備案)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3)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인단독투자의 공연중개기구가 본 성(직할시)내에서 영업성 공연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행사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문화예술공연단체 또는 연예인이 참가하는 영업성 공연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홍콩·마카오·대만 및 외국의 문화예술예공연단체나 개인을 초청한 영업성 공연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인단독투자의 공연장소 경영업체가 본 공연장소 내에서 영업성 공연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행사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문화예술공연단체 또는 연예인이 참가하는 영업성 공연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홍콩·마카오·대만 및 외국의 문화예술예공연단체나 개인을 초청한 영업성 공연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시험구 내에 외국투자자가 경영하는 오락장소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인단독투자의 오락장소를 설립하는 경우 <오락장소 관리조례>, <오락장소 관리방법> 등 법규·규정에 규정된 설립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시험구내에 투자 및 기업을 설립한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타이완지역의 투자자와 해외에 거주중인 중국공민은 이 통지에 의해 조정된 문화시장 관리사항을 적용받는다.   위와 같이 특별히 통지한다.  문화부  2015년 6월 12일 |  | **文化部**  **关于实施中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中国(天津)自由贸易试验区、中国(福建)自由贸易试验区**  **文化市场管理政策的通知**  文市函〔2015〕490号  广东省文化厅、天津市文化广播影视局、福建省文化厅:  为贯彻落实《国务院关于印发中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的通知》（国发〔2015〕18号）、《国务院关于印发中国（天津）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的通知》（国发〔2015〕19号）、《国务院关于印发中国（福建）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的通知》（国发〔2015〕20号），现将中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中国（天津）自由贸易试验区、中国（福建）自由贸易试验区（以下统一简称为“试验区”）内文化市场管理有关政策调整如下：  一、允许在试验区内设立外资经营的演出经纪机构、演出场所经营单位，为本省（直辖市）提供服务  （一）设立合资、合作、独资经营演出经纪机构的，应当在领取工商营业执照后，向省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省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自收到申请之日起20日内作出决定。  （二）设立合资、合作、独资经营演出场所经营单位的，应当自领取工商营业执照之日起20日内，持上述证照以及消防、卫生部门的批准文件，到省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备案，领取演出场所经营单位备案证明。  （三）合资、合作、独资经营的演出经纪机构，在本省（直辖市）内举办营业性演出活动，应当向演出所在地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举办国内文艺表演团体或者演员参加的营业性演出，应当向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自受理申请之日起3日内作出决定；举办涉外或者涉港澳台营业性演出，应当向省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省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作出决定。  （四）合资、合作、独资经营的演出场所经营单位，在本场所内举办营业性演出活动，应当向演出所在地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举办国内文艺表演团体或者演员参加的营业性演出，应当向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自受理申请之日起3日内作出决定；举办涉外或者涉港澳台营业性演出，应当向省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省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作出决定。  二、允许在试验区内设立外资经营的娱乐场所  设立合资、合作、独资经营娱乐场所的，应当符合《娱乐场所管理条例》、《娱乐场所管理办法》等法规规章规定的设立条件，向省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省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作出决定。  三、本通知调整的文化市场管理事项，适用于在试验区内投资、设立企业的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投资者和在国外居住的中国公民。  特此通知。  　　 文化部  　 　 2015年6月12日 |